【2023년도 상반기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】

붙 임 자 료

1. 장학생 선발 기준

1 특기적성 장학금

○ **(선발인원) 35명**(초·중·고·대학생)

- 특기분야별 배정인원

(단위 : 명)

특기분야	4차산업	체 육	무 용	음 악	미 술	문 학	발표강연	기 타
예 시	드론, AI, 빅데이터 통계, 코딩, 발명 등	레슬링, 태권도, 육상경기 등	발레, 무용, 실용댄스, 에어로빅 등	피아노, 바이올린, 타악, 성악 등	포스터, 회화 등	산문, 서예, 글짓기 등	웅변대회, 콘테스트, 토론, 말하기 대회 등	기타분류
배정인원	3	10	5	7	3	2	2	3

※ 접수결과 경쟁률 추이에 따라, 분야별 선발배정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

○ **(지 원 액) 1,000,000원**

○ **(신청자격)** 모두 충족 시

- **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**에 4차 산업, 예·체능 등 위 특기분야 중 **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자**
- ① 또는 ② 해당자

① 세종시 관내 초·중·고·대학교 재학생

②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세종시 계속 거주자(부·모 또는 본인)

○ **(신청방법)** 온·오프라인 개별 신청

○ **(선발기준*) 수상실적**** 배점과 소득배점을 7:3 합산하여 고득점자 선발

* 수상실적 및 소득 배점 산출방법 참고

** **최대 3개 실적까지 제출 가능**(※ 단, 한 가지 특기분야의 수상실적만 제출 가능)

→ 두 가지 이상의 특기분야 수상실적 제출 시 **높은 배점의 분야만 산정**

[동점자 기준]

- **(1순위)** 세종시 관내 학교 재학, 세종시 거주 모두 충족한 신청자
- **(2순위)** 세종시 거주기간이 긴 자
- **(3순위)** 나이(학년) 높은 자

○ **(제외기준)**

- **년 1인 1회만 지원**
- 단체종목 수상자의 경우, 한 학교에서 한 명만 추천 가능
- 공고일로부터 1년이 초과된 수상실적은 0점 처리

○ **(추천권자)**

- **(초·중·고등학교)** 학교장
- **(대학생)** 학과장 또는 학부장

2 디딤돌 장학사업

□ 모범 장학금(대학생)

○ **(선발인원) 60명** ※ 예산범위 내

○ **(지 원 액) 1,000,000원**

○ **(신청자격)** 모두 충족 시

-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세종시 계속 거주자(부·모 또는 본인)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 혹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구간 6구간* 이하인 자

* 금번 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제출(공고일 이후 발급)

○ **(신청방법)** 온·오프라인 개별 신청

○ **(신청기준)** 소득배점* 고득점자 선발 * 소득배점 산출방법 참고

[동점자 기준]

- **(1순위)** 세종시 관내 학교 재학, 세종시 거주 모두 충족한 신청자
- **(2순위)** 세종시 거주기간이 긴 자
- **(3순위)** 나이(학년) 높은 자

○ **(제외기준) 휴학생, 수료생**

○ **(행정사항)** 2022년도 하반기 장학금 수혜 시 2023년도 상반기 후순위 선발 예정

□ 공익발전기여 장학금

○ **(선발인원) 12명**(중·고·대학생)

○ **(지 원 액)**

- **(중 학 생) 600,000원 / (고등학생) 900,000원 / (대 학 생) 1,000,000원**

○ **(신청자격)** 모두 충족 시

- ① 또는 ② 해당자

① 세종시 관내 중·고·대학교 재학생

②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세종시 계속 거주자(부·모 또는 본인)

- ③ 또는 ④ 해당자

③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자 본인 또는 자녀

④「의사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자 본인 또는 자녀

○ **(신청방법)** 온·오프라인 개별 신청

○ **(선발기준)** 예산범위 내 선발

[동점자 기준]

- **(1순위)** 국가유공자로서 사망한 자의 자녀*

  * 예시>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순직군경, 순직공무원 등

- **(2순위)** 상이등급 높은 순* ※ 2순위 내에서 동점자 발생 시 세종시 거주기간

  * 예시> 전상군경, 공상군경, 공상공무원

- **(3순위)** 그 외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자

○ **(제외기준)** 공익발전기여 장학금을 수혜한 적이 있는 자*

* **평생 최대 1회만 지원**

○ **(추천권자)**

- **(중·고등학생)** 학교장

- **(대학생)** 학과 또는 학부장

▢ 학자금 원금상환 지원 분야

○ **(선발인원) 25명**(대학생) ※ 예산범위 내

○ **(지 원 액) 최대 1,000천원***

* 개인별 대출원금 잔액에 따라 상이

○ **(신청자격)** 모두 충족 시

-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세종시 계속 거주자(부·모 또는 본인)
-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* 대출을 받은 국내 대학교 재학생 * 등록금 및 생활비
-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지원구간이 6구간 이하*인 자 * 이번 학기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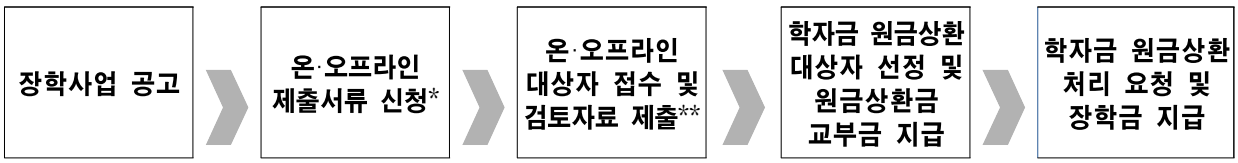
○ **(신청방법)** 온·오프라인 개별 신청(한국장학재단 협업 추진)

○ **(선발기준)** 예산범위 내 선발

[동점자 기준]

- **(1순위)** 이번 학기의 학자금지원구간이 낮은 순
- **(2순위)** 다자녀(3명 이상)
- **(3순위)** 그 외 예산범위 내 대출이자 금액이 많은 자

○ **(선발절차)** ※ 개별 신청 가능



* (오프라인 신청) 제출서류 원본 제출, 미비서류 검토 및 재요청 / ** 한국장학재단 대출이자 검토자료 회신 요청

○ **(제외기준)**

- **2023년 진흥원의 타 장학금(학자금 대출이자 미포함) 수혜자 신청 불가***

* 수혜 받은 적이 없다면 모범 장학금 등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신청 가능(단, 둘 중 하나의 장학금만 선발될 수 있으며 최종 선발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)

- 한국장학재단 농어촌 대출 금액, **대학교(원) 수료생 및 휴학생**

○ **(행정사항)**

- 대출 학기가 여러 개일 경우 사업 담당자가 임의로 수혜자에게 가장 유리한 학기 상환 가능

3 무지개 선발기준

▢ 장애인 면학 분야

○ **(선발인원) 43명**(초·중·고·대학생) ※ 예산범위 내

○ **(지 원 액)**

- **(초등학생) 300,000원** - **(중 학 생) 600,000원**
- **(고등학생) 900,000원** - **(대 학 생) 1,000,000원**

○ **(신청자격)** 모두 충족 시 ※ **상·하반기 중복 수혜 가능**

- 신체, 지적, 발달 등 장애인으로 등록된 학생*

  *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24조에 의거, 전공과 포함

- ① 또는 ② 해당자

  ① 세종시 관내 초·중·고·대학교 재학생

  ②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세종시 계속 거주자(부·모 또는 본인)

○ **(신청방법)** 온·오프라인 개별 신청

○ **(신청기준)** 소득배점* 고득점자 선발 * 소득배점 산출방법 참고

[동점자 기준]

- **(1순위)** 장애의 정도가 심각한 학생(장애 증명서 기준)
- **(2순위)** 세종시 관내 학교 재학, 세종시 거주 모두 충족한 신청자
- **(3순위)** 세종시 거주기간이 긴 자

○ **(추천권자)**

- **(초·중·고등학생 및 전공과)** 학교장
- **(대학생)** 학과 또는 학부장

□ 장애인 특기적성 분야

○ **(선발인원) 5명**(초·중·고·대학생)

○ **(지 원 액) 1,000,000원**

○ **(신청자격)** 모두 충족 시

- 신체, 지적, 발달 등 장애인으로 등록된 학생*

  *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24조에 의거, 전공과 포함

-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**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자**

- ① 또는 ② 해당자

  ① 세종시 관내 초·중·고·대학교 재학생

  ②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세종시 계속 거주자(부·모 또는 본인)

○ **(신청방법)** 온·오프라인 개별 신청

○ **(선발기준*) 수상실적**** 배점과 소득배점을 7:3 합산하여 고득점자 선발

* 수상실적 및 소득 배점 산출방법 참고

** **최대 3개 실적까지 제출 가능**(※ 단, 한 가지 특기분야의 수상실적만 제출 가능)

→ 두 가지 이상의 특기분야 수상실적 제출 시 **높은 배점의 분야만 산정**

[동점자 기준]

- **(1순위)** 장애의 정도가 심각한 학생(장애 증명서 기준)
- **(2순위)** 세종시 관내 학교 재학, 세종시 거주 모두 충족한 신청자
- **(3순위)** 세종시 거주기간이 긴 자

○ **(제외기준)**

- **년 1인 1회만 지원**
- 단체종목 수상자의 경우, 한 학교에서 한 명만 추천 가능
- 공고일로부터 1년이 초과된 수상실적은 0점 처리

○ **(추천권자)**

- **(초·중·고등학생 및 전공과)** 학교장
- **(대학생)** 학과 또는 학부장

□ 다문화가정·북한이탈주민 분야

○ **(선발인원) 15명**(초·중·고·대학생) ※ 예산범위 내

○ **(지 원 액)**

- **(초등학생) 300,000원** - **(중 학 생) 600,000원**
- **(고등학생) 900,000원** - **(대 학 생) 1,000,000원**

○ **(신청자격)** 모두 충족 시 ※ **상·하반기 중복 수혜 가능**

- ① 또는 ② 해당자

① 세종시 관내 초·중·고·대학교 재학생

②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세종시 계속 거주자(부·모 또는 본인)

- ③ 또는 ④ 해당자

③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 및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다문화 가정

④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

○ **(신청방법)** 온·오프라인 개별 신청

○ **(선발기준)** 신청자격 충족, 예산범위 내 선발

[동점자 기준]

- **(1순위)** 소득배점이 높은 자
- **(2순위)** 세종시 거주기간이 긴 자
- **(3순위)** 나이(학년) 높은 자

○ **(제외기준)**

- **(대학생)** 휴학생, 수료생 지원불가

○ **(추천권자)**

- **(초·중·고등학생)** 학교장
- **(대학생)** 학과 또는 학부장

2. 장학금 온라인 신청 안내 사항

▢ 온라인 신청 방법 예시

❶ 핵심인재육성 장학사업 : 특기적성 장학금

○ 인재육성사업 → 장학금 신청 → 특기적성 클릭



○ 신청자 및 보호자 인적 사항 입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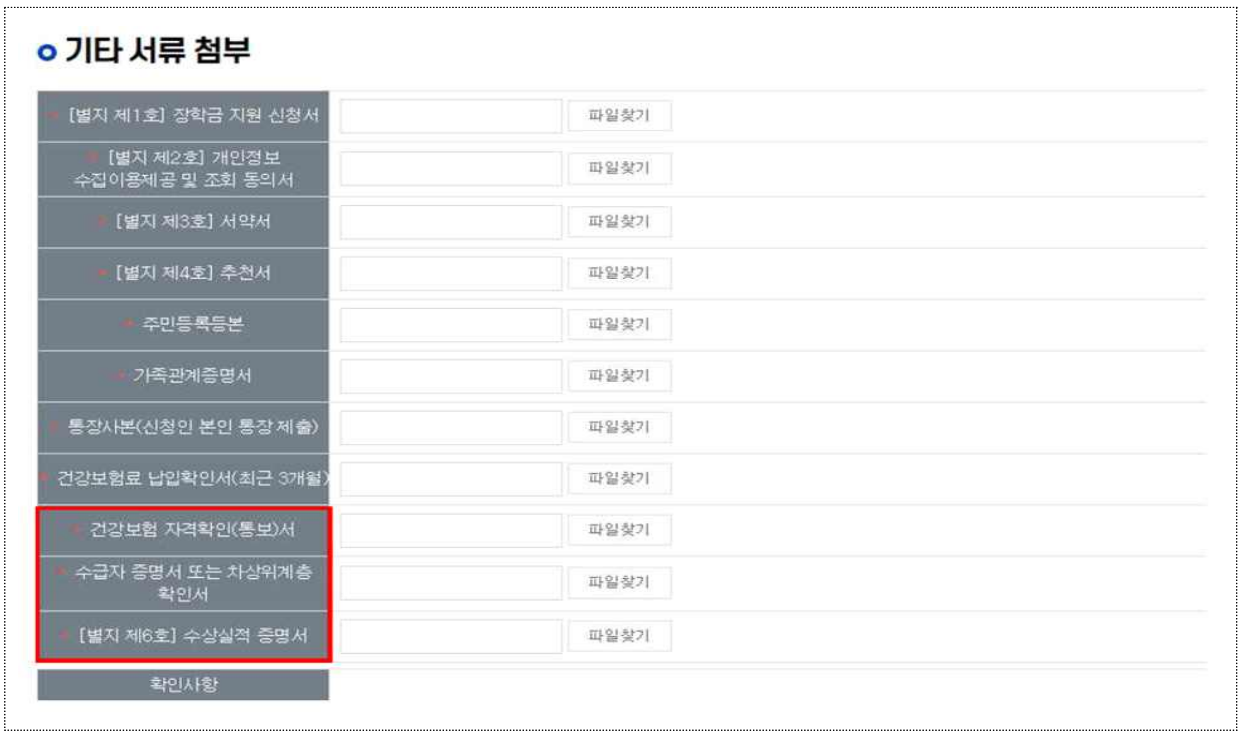
○ **수상실적 등록** → 제출실적이 2개 이상일 경우 '추가'를 클릭하면 최대 3개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.



○ 장학금 수혜자(학생 명의)의 계좌정보 입력



○ **제출서류 첨부** → 핸드폰 사진 파일, PDF 파일, JPG, PNG 등 업로드 가능 ※ 아이폰 확장자(HEIC) 파일 불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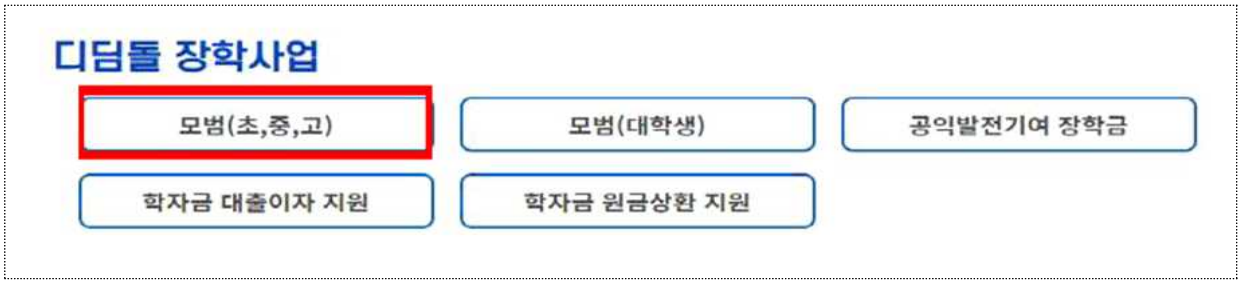


[참고 사항]

- **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한부모가정**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, 자격확인(통보)서 대신 **수급자·차상위계층·한부모 확인서(증명서)**만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.
- 위 3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**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, 자격확인(통보)서를**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.
- **수상실적 증명서**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비롯하여, 상장 사본, 수상실적 증빙서류, 대회 공고문 등을 함께 올려주셔야 합니다.
- 하나의 제출 칸에 업로드해야 할 **파일이 2개 이상이라면 '알집'으로 압축하신 후** 올려주시면 됩니다. 한 개씩 업로드할 경우 마지막에 업로드 한 파일만 남아있으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

❷ 디딤돌 장학사업 : 모범 장학금(초·중·고)

○ 인재육성사업 → 장학금 신청 → 모범(초·중·고) 클릭



○ 신청자 및 보호자 인적 사항 입력



○ 장학금 수혜자(학생) 명의 계좌 정보 / 가구정보 입력



○ **제출서류 첨부** → 핸드폰 사진 파일, PDF 파일, JPG, PNG 등 업로드 가능 ※ 아이폰 확장자(HEIC) 파일 불가능



[참고 사항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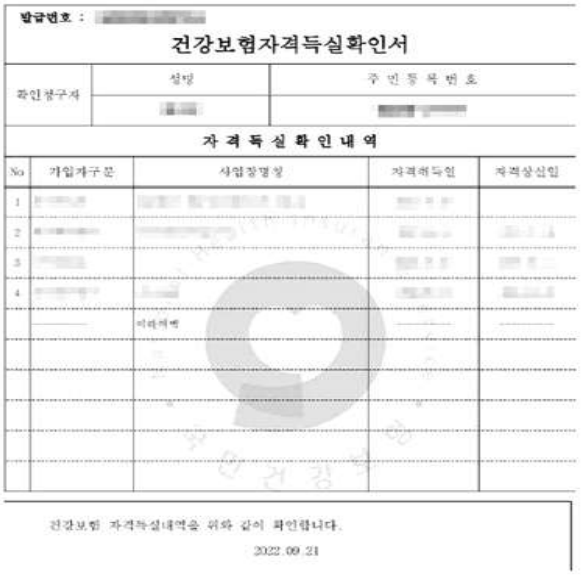
- **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한부모가정**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, 자격확인(통보)서 대신 **수급자·차상위계층·한부모 확인서(증명서)**만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.
- 위 3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**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, 자격확인(통보)서를**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.
- 하나의 제출 칸에 업로드해야 할 파일이 2개 이상이라면 '알집'으로 압축하신 후 올려주시면 됩니다. 한 개씩 업로드할 경우 마지막에 업로드 한 파일만 남아있으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

참 고 건강보험료 서류 발급 시

○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닌 **자격확인(통보)서**

○ 자격득실확인서에는 사업장 등 가입정보가 작성되어 있으나, 자격확인서에서는 가입된 가구원이 기재됨
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X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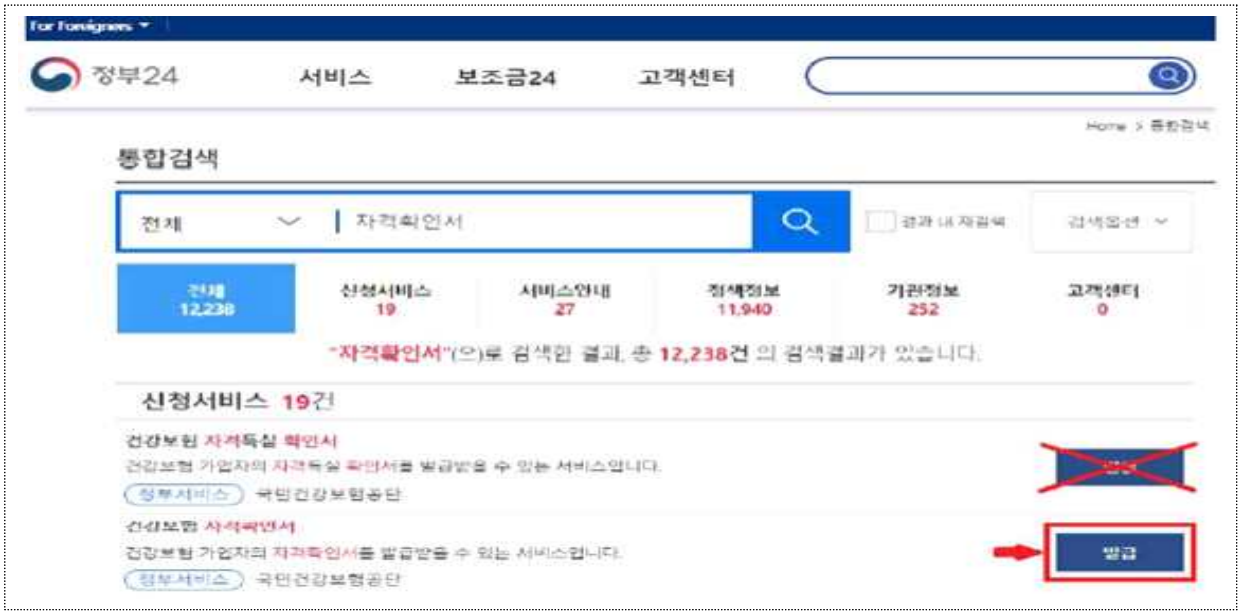


건강보험자격확인(통보)서(O)



○ 건강보험 자격확인(통보)서 발급 방법*

* **정부24 접속 → '자격확인서' 검색 →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발급**



○ 만약 자격확인서 발급 결과 등본의 <u>가구원 중 일부가 없다면</u> 별도로 가입된 가구원이므로 해당 가구원의 자격확인서와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도 제출해야 함(미제출 시 최고 소득자로 산정)


건강보험 자격확인(통보)서

통보번호 :

수신기관명	요양기관용	자격확인요청일	2022.09.21
증 번 호		사업장관리번호	
가 입 자 (세대주)	성명	주 민 등 록 번 호	

자 격 확 인 내 역

성 명	주민등록번호	자격취득일	자격상실일	납부일자사유 및 기간
김명성	0000000000000			
김연재				
김승녀				
김세종				

이와같이 건강보험자격을 확인합니다.
2022.09.21

(예시) 가구원이 4명일 경우

(등본상 가구원 4명 기준) 가구원 4명의 정보가 모두 기재되어 있으면
→ 올바른 제출


건강보험 자격확인(통보)서

통보번호 :

자 격 확 인 내 역

성 명	주민등록번호	자격취득일	자격상실일	납부일자사유 및 기간
김명성	0000000000000			
김연재				
김승녀				

이와같이 건강보험자격을 확인합니다.

등본상 가구원이 4명인데 자격확인(통보)서에 <u>**3명만 나올 경우**</u>

+


건강보험 자격확인(통보)서

통보번호 :

자 격 확 인 내 역

성 명	주민등록번호	자격취득일	자격상실일	납부일자사유 및 기간
김세종				

이와같이 건강보험자격을 확인합니다.

(예시) 등본상 가구원이 4명일 경우

↓

따로 분리된 가구원 1명의 자격확인(통보)서 및 납부확인서 발급·제출 필요
→ 알집으로 묶어서 얼로드

3. 서류 제출 시 자주 틀리는 사항

☐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

○ 세종특별자치시 거주기간 내역 포함*

* 예시> 세종특별자치시 2012. 7. 1.에 최초 전입했다면 반드시 2012. 7. 1.부터의 주소 내역 포함 발급

○ 세대 구성 정보 및 세대 구성원 정보 또한 반드시 포함

○ 등본이 여러 장으로 발급될 때 모두 다 제출하여야 함

☐ 통장사본 제출 시

○ 반드시 신청 학생 명의의 통장이어야 함*

* 시설아동·청소년 등 발급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제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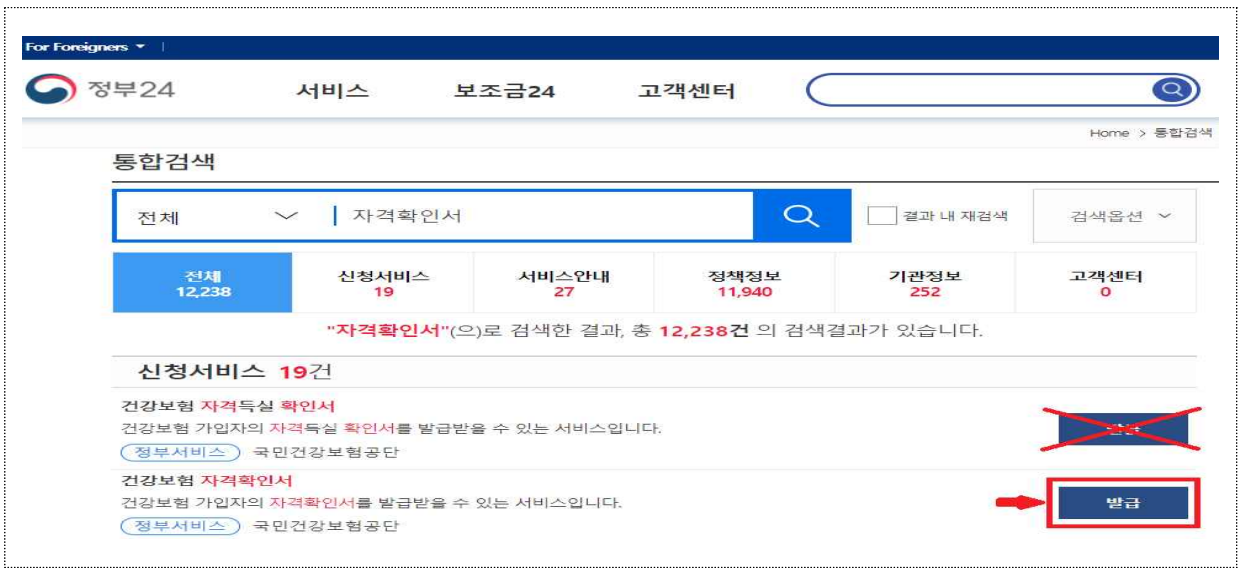
○ 휴면계좌이거나 인터넷 뱅킹 입금이 불가능한 계좌, 적금통장, 청약통장 등은 지급 불가

☐ 건강보험료 서류 발급 시

○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닌 **자격확인(통보)서임,** 자격득실확인서에는 사업장 등 가입정보가 쓰여 있으나 자격확인서에는 가입된 가구원이 기재됨

○ 건강보험 자격확인(통보)서 발급 방법*

* **정부24 접속 → '자격확인서' 검색 → 자격확인서 발급**



○ 만약 자격확인서 발급 결과 등본의 가구원 중 일부가 없다면 별도로 가입된 가구원이므로 해당 가구원의 자격확인서와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도 제출해야함* * 미제출시 최고 소득자로 산정

[자주 틀리는 사례 예시]

◦ 신청자 김진흥 씨는 아버지 김평생 씨, 할아버지 김인재 씨와 등본상 같이 등재되어 있다. 김진흥 씨는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잘 제출하였다고 생각하였다. 그런데 선발 결과 최고 소득자로 판정되어 탈락하였다.

◦ 소득이 많은 가정이 아니어서 억울한 김진흥 씨는 탈락 사유를 문의하였다. 그 결과 할아버지 김인재 씨가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에 없었고, 할아버지의 건강보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최고 소득자로 산출된 것이었다.

⇒ **<u>할아버지 김인재 씨 명의의 자격확인서 및 납입확인서 1부씩 추가제출 필요</u>**

▣ **예외 사항**

◦ 신청자 기준 형제자매가 건강보험료를 별도 납부 중일 경우에는 건보료 서류 불필요

◦ 신청자 기준 2촌까지만 산정하며 3촌 이상, 동거인 등은 해당하지 않음

▢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 발급 시

○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통지서 발급 가능



4. 장학생 평가 산출 방법

1 수상실적배점 산출

▢ 산출원칙

○ <u>공고문과 진흥원 장학사업 관리 규정을 원칙</u>으로 하되, 공고문과 장학사업 관리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평가 방법은 본 문서에 기재된 방식으로 산출한다.

○ **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**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<u>**제출받은 서류로만 판단**</u>하며, 신청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.

▢ 수상실적배점 산출

○ 수상실적 평가표, 배점 산출

- 대회의 등수는 <u>**실제 시상 순위를 기준**</u>으로 한다.*

  * 예시> 대상, 금상, 은상, 동상 순의 시상인 경우, <u>동상은 4위로 산정하여 0점 처리</u>

- 해당하는 기준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 <u>**더 높은 기준의 배점으로 산출**</u>한다.

- 대회 규모 및 등수에 따른 **수상실적 배점**은 아래 표와 같다.

규 모	기 준		수상실적배점		
			1위	2위	3위
국제 대회	1	◦ 세계 대회	100	95	90
	2	◦ 아시아 대회	85	80	75
전국 대회	3	◦ 세계대회 선발전 ◦ 국가대표 선발전 ◦ 정부, <u>**공공기관***</u>, 설립에 관한 법률 기관 주최	70	65	60
	4	◦ NICE평가정보 기준 '대기업(상장기업)' 주최 ◦ 전국대회 선발전 ◦ 시도 단위 규모 전국대회	55	50	45
	5	◦ NICE평가정보 기준 '<u>**중견기업****</u>' 주최 ◦ 기초 시군 단위 규모 주최 ◦ 재단법인, 사단법인 주최	40	35	30
	6	◦ NICE평가정보 기준 '<u>**중소기업*****</u>' 주최 ◦ 민간단체 주최 ◦ 공공 및 법인 등록 외 비영리단체 주최	25	20	15
	7	◦ 개인 주최 민간대회	10	5	0

* **【공공기관】**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지정된 공공기관
** **【중견기업】**「중견기업법 제2조제1호」에 의한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 기업
*** **【중소기업】**「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」 제3조에 의해 지정된 중소기업
※ (기준)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,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 중소기업에 해당함

2 소득배점 산출

▢ 산출원칙

○ **소득 배점 산출은 등본상 가구원들의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**하며, 산출을 위해 신청자에게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최근 3개월분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수집한다*.

* 등본상 가구원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함. 별도 납부 시 모두 제출

- 신청자 기준 2촌 이내까지만 반영한다. 단, 형제·자매가 건강보험료를 별도 낼 때 형제·자매를 반영하지 아니한다.
- 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, **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해당 증명서로 대체**한다.

▢ 가구원 수 산정

○ 가구원 수 산정의 원칙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같이 등재된 가구원 수이다.

○ 다만, 자격확인서에 등본 외의 인원이 포함되어있을 경우 가구원 수는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산정한다*

* 예시> 등본상 가구원은 2명이나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상 3명일 경우 가구원 수 3명으로 산정

▢ 가구 건강보험료 계산방법

○ **(산식)** 장학금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÷납부 개월수(3)

- 실제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와는 상관없이 부과된 금액 기준으로 계산*

* 장기 요양보험료, 연말정산 제외

○ **(보험료 합산)** 가구원 중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(맞벌이 등)이거나,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면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가구 보험료 계산

- 둘 중 낮은 건강보험료 감경 후 합산(높은 보험료+낮은 보험료×0.5)

□ 소득배점

○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(보건복지부)를 기준으로, 위 항목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수 및 가구 건강보험료로 기준중위소득(%)을 산정한다.

○ 산정된 기준중위소득(%)을 기반으로 산출할 소득 배점은 아래 표와 같다.

구 분	배 점	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	제 출 서 류
기초생활 수급자	100	보장시설수급자	해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(NEIS 발급) 등
		생계급여수급자(30%)	
	95	의료급여수급자(40%)	
	90	주거급여수급자(43%)	
	85	교육급여수급자(50%)	
차상위 계층	80	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	한부모가족증명서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확인서 등
		차상위자활대상자	
		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	
		차상위계층대상자	
기준중위 소득이하	75	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없거나 0원인 경우	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(최근 3개월분) + 건강보험 자격확인서(가구원 모두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)
	70	중위소득 65% 이하	
	65	중위소득 65%초과~70%이하	
	60	중위소득 70%초과~80%이하	
	55	중위소득 80%초과~90%이하	
	50	중위소득 90%초과~100%이하	
	이후 중위소득 10% 증가시마다 배점 5점씩 감소		

[참고 사항]

- 기준중위소득(100%)*

*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※ (출 저) 보건복지부 「2023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」

(단위 : 원)

가구원수	소득기준	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		
		직장가입자	지역가입자	혼 합
2인	3,457,000	123,511	68,365	124,093
3인	4,435,000	157,684	121,134	159,423
4인	5,401,000	191,845	151,504	194,564
5인	6,331,000	226,361	191,639	230,142
6인	7,228,000	261,015	235,637	266,386

※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의 경우 진흥원으로 문의 바람